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단51016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공사

변론 종결 2020. 11. 24.(피고 2.에 대하여), 2020. 12. 8.(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 고 2020. 12.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984,8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62,564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 경위

1)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B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36,630,000, 보험기간을 2017. 11. 15. ~ 2019. 11. 30.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7. 11. 15.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36,630,000원, 보험기간 2017. 11. 15. ~ 2019. 11. 30.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2) 소외 회사는 위 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 B과의 사이에 체결된 보험사 여신 거래기본약관에 기한 가계용 대출약정에 따라 33,3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B에게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3) 피고 B은 2019. 11. 3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약정에서 정한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20. 3. 18. 소외 회사에 그날까지 발생한 연체금

33,984,86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 C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경위

1) 피고 B은 2017. 9. 26.경 피고 C공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담보한도액을 35,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7. 11. 9. 피고 C공사 · 에 이를 통지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2020. 3. 18.경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20. 3. 23. 피고 C공사에게

위 질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하여 2019. 11. 30. 종료되었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20. 11. 13. 기준으로 체납한 임대료 846,370원(= 월임대료 765,800원 + 연체료

26,100원 + 불법주거배상금 54,470원), 관리비 1,718,350원, 합계 2,637,43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3,984,

868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0. 4. 1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6. 1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C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 C공사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B의채무금합계2,637,436원을공제하고남은32,462,564원(=35,100,000원-2,637,4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정권

별지